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28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안)

나.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3396-5453, 5485
팩스: 02-3396-8754, email: chldudddk77@junggu.seoul.kr, 20160111811@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구분한다.”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 중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를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3(종량제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 L	80	90
5 L	120	130
10 L	220	250
20 L	440	490
30 L	660	740
50 L	1,100	1,250
75 L	1,650	1,880

2. 특수종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 L	1,840	2,040
50 L	4,590	5,100